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발의자 : 김주영 · 박정 · 안호영
박홍배 · 박해철 · 김태선
이용우 · 허성무 · 박상혁
정태호 · 박균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,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,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 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.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 ·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, 현행 「하천법」 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 가 있음.

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, 반복 ·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,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

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73조 등).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점용료의 납부 방법)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“신용카드등”이라 한다)으로 낼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.

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,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수해방지 등을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
2. 반복적,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

3. 그 밖에 하천 이용·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

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9조(이행강제금)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하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”는 “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”로, “점용료”는 “이행강제금”으로 본다.

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37조의2(점용료의 납부 방법)</p> <p>①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“신용카드 등”이라 한다)으로 낼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.</p> <p>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,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	<p>제73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</p> <p>①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</p> <p>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----- ----- -----</p>

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
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
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
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
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<신 설>

---.

1. 수해방지 등 긴급한 실시가
필요한 경우

2. 반복적, 상습적으로 제33조에
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
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

3. 그 밖에 하천 이용 · 관리 및
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
실시가 필요한 경우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9조(이행강제금) ① 하천관리
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
회복 명령이나 제69조에 따른
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
명령이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
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
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
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
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
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
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

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
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
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
다.

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
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
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
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
어야 한다.

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
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
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
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
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
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
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하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
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
명령을 이행하거나 「행정대집
행법」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
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
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
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
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
다. 이 경우 “하천점용허가를 받

은 자”는 “이 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”로, “점용료”는 “이 행강제금”으로 본다.

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 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 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